

[사 건 명] 행심 2017-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8. 인천광역시 ○○ ○○○ △△△에 위치한 건물 중 제지상3층 전부(면적 8.8㎡, 이하 ‘이 사건 신청 장소’ 라 한다)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영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중학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165.42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64.31m,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2017. 1. 16.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금지” 결정된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7. 3. 7.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

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정화구역 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미 신청지 바로 옆 건물(갑제2호증)과 맞은 편 건물(갑제3호증) 등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PC방)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보다 ●●중학교 더 가까운 곳에 해제되어 PC방을 영업하는 곳(갑제4호증)이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유흥주점은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생각조차 안하기 때문에 일반 술집이 있는 건물보다 더 청소년들의 출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다른 건물에도 유흥주점이 있음에도 허가가 난 경우도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장소만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 장소는 면적이 ㉸㉸㉸.80㎡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도가 매우 적으며, 거기다 이곳은 학원가도 아니기에 학원을 할 수 없으며 적당한 업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PC방 설치를 금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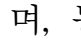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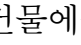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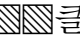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형평성 차원에서 주장하는 옆 건물(갑제2호증)은 인천광역시 □□ □□□ □□□-□□번지로서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86m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PC방 영업장소는 약 197m로 일부분만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해제” 된 바 있으며, 맞은편 건물(갑제3호증)은 인천광역시 ■■■ ■■■■ ■■■■-6,7,8번지로서 ●●중학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92m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나, 실질적인 PC방 영업장소는 약 207m로서 일부분만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제된 바 있으며, 갑제2,3호증으로 제시한 건물은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설치장소는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상대정화구역 규제선에 위치함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법 제처-09-0092. 2009.5.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 범위를 준용해서 해제 처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장소는 특히 성인들이 출입하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으로 학생들이 PC방 출입시 유흥가의 환경과 접할 수 있는 지역인 반면, 청구인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해제” 되었다고 하는 PC방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 ■■■■-4, 5번지이며(갑제4호증), 동건물은 유흥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서 건물 환경 위치가 비교적 건전하다 사료되고 당시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매뉴얼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 실화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정화구역관련 ●●중학교 학부모 모니터단을 공개 참관시키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인천광역시 ○○ ○○○ ▽▽▽번지로서 ●●중

학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64m, 건물자체가 200m 이내에 위치하며, 동일 건물에는 클럽, 클럽, 클럽 등 유흥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습 및 학생 면학 분위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지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구법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동법 부칙 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2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장소와 다른 지역에서 PC방 영업을 하여 오던 차에 추가로 PC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 장소를 2016. 11.경 공매를 통해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 장소를 공매로 매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신청 장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하므로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제처분을 받아야 PC방 영업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장소를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2016. 12. 28. 피청구인에게 PC방 영업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중학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165.42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64.31m,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2017. 1. 16.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로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선고 96누 8285판결)

(2)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위치한 곳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제처분이 있어야 청구인이 PC방 영업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이 사건 신청 장소는 평소 사람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사거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드시 학교의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 장소 있는 곳은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구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있는 건물에는 3개의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이 건물에 학생들의 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있는 건물에서 3차례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금지처분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PC방 영업을 확장할 요량으로 이 사건 신청 장소를 매입할 때부터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제처분을 받아야만 PC방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업제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소유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민원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출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호증, 4호증과 관련된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 피청구인 측의 반박내용(위 III. 가. 및 나.항 참조)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반박내용을 원용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언하지 않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